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5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김정호·이연희·박희승

허종식 • 정성호 • 윤후덕

어기구 · 박 정 · 임미애

신영대 · 전재수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2022년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 금을 조정하는 '납품대금연동제'를 도입하였음.

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,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·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.

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, 제21

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"가격이"를 "가격 또는 주요 경비가"로 한다.

12의2. "주요 경비"란 수탁·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(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) 및용수(用水)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.

제21조제1항제4호 중 "조정요건"을 "주요 경비, 조정요건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요 경비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2호의2·제 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·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2의2. "주요 경비"란 수탁·위</u>
	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
	<u>사용되는 에너지(「에너지</u>
	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
	너지를 말한다) 및 용수(用
	水)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
	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
	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
	<u>한다.</u>
13. "납품대금 연동"이란 주요	13
원재료의 <u>가격이</u> 위탁기업과	<u>가격 또는 주요</u>
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	<u> 경비가</u>
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	
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	
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	
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.	
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 위탁기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
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	
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	

다음 각 호의	사항을	적은	약
정서를 그 수	탁기업에	발급	하
여야 한다.			

- 1. ~ 3. (생략)
- 4.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<u>조정요건</u>, 기준 지표 및 산식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5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주요 경비, 조정요건
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